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제1316호 2018. 1. 15.(월)

고 시

-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고시----- 2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----- 3

공 고

- 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----- 5
-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----- 6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

편집 : 공보과 (☎ 270-8539)

목포시 고시 제2018-7호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. 15.

목 포 시 장

1. 사 업 명 : 용해동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
2. 사업주체
 - 성 명 : 주식회사 아람주택
 - 주 소 :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번길23
3. 사업승인 개요
 - 위 치 :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71-113번지 외 46필지
 - 규 모 : 연면적 66,269.5546㎡, 지하2/지상18층~19층, 411세대
 - 공급유형 : 분양
4. 사업계획승인일 : 2017. 10. 10.
5. 변경승인일자 : 2018. 01. 02.
6. 준공예정일자 : 2019. 08. 01.
7. 주요변경내용 : 분양면적 변경(공용부분 면적 변경)

유 형	세대수	공급면적(변경전)			공급면적(변경후)		
		계	전용면적	공용면적	계	전용면적	공용면적
116형	76	143.787	116.7669	27.0201	145.9557	116.7669	29.1888
84형	261	106.6931	84.903	21.7901	106.1266	84.9030	21.2236
82형	74	102.786	82.047	20.739	102.5567	82.0470	20.5097

목포시 고시 제2018-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15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불	임	참	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(조서)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
1	용해로59번길 4	2018-01-15	건물멸실
2	녹색로134번길 19	2018-01-15	건물멸실
3	영산로40번길 23-2	2018-01-15	건물멸실

목포시 공고 제2018-77호

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18. 1. 15.

목 포 시 장

1. 제 목 : 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
2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
3. 공고기간 : 2018. 1. 15. ~ 2018. 1. 30.(15일간)
4. 공고내용

일련 번호	대 지 위 치 (목포시)	건축주 (동의자)	허가번호	도로지정 현황			이해관계인 동의여부
				길이 (m)	너비 (m)	면적 (㎡)	
1	목포시 용당동 976-5	최용식	2017-건축행정과- 신축허가-179	11.4	3	8.82	동의
2	목포시 연산동 613-1외 2필지	(유)청결환경	2017-건축행정과- 신축허가-115	31.7	4	47	동의
3	목포시 산정동 154-33외 2필지	차보나	2017-건축행정과- 신축신고-53	19.91	0.85	17	동의
4	목포시 대양동 530	성영준	2017-건축행정과- 신축허가-203	55.6	4	12.8	동의
5	목포시 죽교동 335	(주)설레임	2017-건축행정과- 신축허가-220	-	-	1	동의
6	목포시 죽교동 335-4	(주)설레임	2017-건축행정과- 신축허가-220	-	-	11	동의
7	이 하 빈 칸						
8							
9							

5. 공고방법 : 시보, 게시판, 홈페이지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
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에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로 문의(☎
061-270-3472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공고 제2018-81호

목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『목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. 15.

목 포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종량제 규격봉투에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쓰레기 배출방법(영문포함)을 표기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(5ℓ, 10ℓ, 20ℓ, 30ℓ, 50ℓ, 75ℓ, 100ℓ, 공공용, 재사용포함) 내용 수정
 - 배출시간 안내
 - 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 재활용품 혼합금지)
 - 배출시간 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
 - 배출방법 안내

쓰레기 배출방법		
일반쓰레기	음식물쓰레기	대형폐기물
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	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

- 과태료 안내 (*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 - 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, ● 배출시간 위반
 - 비닐봉지 무단투기, ● 음식물 혼합배출 등

- 영어 안내문

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

(재활용품과 음식물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.)

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

(만약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※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○ 「목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」 제9조(쓰레기봉투의 제작)1항, 3항, 4항

5. 관련부서 의견

○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해당없음

○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6.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없음

7. 예산상황 : 별도 예산 조치 필요없음

8. 입법예고 : 2018. 1. 15. ~ 2018. 2. 6.(22일간)

9. 사전 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 없음

10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11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. 2. 6(화)까지 목포시장(자원순환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자원순환과
우편번호 58613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83), 직접방문 등

12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(☎ 061-270-85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(안)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3항 중 “별표 5”를 “붙임 1”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 6항 중 “별표 8”를 “붙임 2”과 같이 개정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(별표 5)

현	행	개	정	안					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 목포시 상징마크 쓰레기봉투(20ℓ) - 일반 용 - 1.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. 2.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. 3. 이 봉투외의 다른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 “쓰레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 야간에만 버려야 하며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토요일에는 버리면 안 됩니다.” 목 포 시 장 (인) 연락처 : 목포시 자원순환과(전화 : 270-8503)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 연도 : 년		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 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- 일반용 (20ℓ) - 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재활용품 혼합금지) 배출시간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 쓰레기 배출방법 <table> <tr> <td>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</td> <td>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</td> <td>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</td> </tr> </table> 과태료 안내 <table> <tr> <td>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</td> <td>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</td> </tr> </table> 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 목 포 시 장  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 연도 : 년			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
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						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								

(광고 게재시)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목포시 상징마크

쓰레기봉투(20ℓ)

- 일반용 -

1.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.
2.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.
3. 이 봉투외의 다른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

“쓰레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 야간에만 버려야 하며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토요일에는 버리면 안 됩니다.”

목 포 시 장 (인)

연락처 : 목포시 자원순환과(전화 : 270-8503)

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

제작 연도 : 년

광고 (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)

♻️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.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목포시

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

- 일반용 (20ℓ) -

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재활용품 혼합금지)

배출시간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

● 쓰레기 배출방법 ●

일반쓰레기

종량제봉투 사용
음식물 혼합금지

음식물쓰레기

전용수거용기에
납부필증 부착 배출

대형폐기물

동주민센터에서
스티커 부착 배출

● 과태료 안내 ●
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

배출시간 위반

비닐봉지 무단투기

음식물 혼합배출 등

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

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

목 포 시 장

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

광고 (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)

♻️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(별표 8)

현행	개정안
(마감)	(마감)
재사용 종량제 봉투 (20ℓ) - 상품을 담은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-  목포시 목포시 마크 쓰레기봉투는 20:00~06:00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.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 연락처 : 목포시자원순환과 (270-3337)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	 목포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(20ℓ)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. 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재활용품 혼합금지) 배출시간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 쓰레기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가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과태료 안내 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 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 목포시  연락처: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

(붙임 1)

쓰레기봉투제작사양(제9조 관련)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

목포시
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
- 일반용 (20ℓ) -

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 재활용품 혼합금지)
배출시간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

쓰레기 배출방법

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과태료 안내
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
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

목 포 시 장 

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

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
제작 연도 : 년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

목포시
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
- 공공용 (50ℓ) -

1. 이 봉투는 시가지 청소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
2.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쓰레기 배출방법

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과태료 안내
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
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

목 포 시 장 

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

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
제작 연도 : 년

(광고 게재시)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

목포시
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
- 일반용 (20ℓ) -

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 재활용품 혼합금지)
배출시간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

쓰레기 배출방법

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과태료 안내
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
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

목 포 시 장 

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

광고 (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)
♻️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.

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.



목포시
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
- 공공용 (50ℓ) -

1. 이 봉투는 시가지 청소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
2.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쓰레기 배출방법

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과태료 안내
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
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

목 포 시 장 

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

광고 (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)
♻️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.

(붙임 2)

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사양

(앞면)	(뒷면)										
 목포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(20ℓ)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. 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 재활용품 혼합금지) 배출시간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 ● 쓰레기 배출방법 ●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</td> <td>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</td> <td>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</td> </tr> </table> ● 과태료 안내 ●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</td> <td>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</td> </tr> </table> 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 목 포 시 장  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	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	 목포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(20ℓ)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. 일반생활쓰레기(음식물, 재활용품 혼합금지) 배출시간: 일몰 후 ~ 일출 전 배출 ● 쓰레기 배출방법 ●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</td> <td>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</td> <td>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</td> </tr> </table> ● 과태료 안내 ●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</td> <td>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</td> </tr> </table> ※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-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-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/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. 목 포 시 장  연락처: 목포시 자원순환과(☎270-8502)	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
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								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										
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	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	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									
주간,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	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										

제작업체 고유번호
또는 품질인증표시

제작업체 고유번호
또는 품질인증표시

【관련법령】

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⑤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,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(從量制)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 (이하 "종량제 봉투등"으로 한다)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,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목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

제1장 총 칙

제9조 (쓰레기봉투의 제작)

- ①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와 도로변,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되, 봉투전면에 목포시의 문장, 봉투용량, 용도, 주의사항, 목포시의 명칭 및 연락처,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고,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.<개정 96·9·30, 98·5·18, 2008·10·20>
-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투명하게 제작하며,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,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옅은청색으로 한다.<개정 2000·11·6>
- ③쓰레기 봉투의 크기,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.<개정 96·9·30>
-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·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,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<삭제 2016.10.17.>

- ⑥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0리터,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한해 별표8과 같이 엷은 녹색으로 M(엠)자형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.<개정 2002·9·30, 2008·10·20>
- ⑦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의 별도수거와 재활용을 위해서 5리터 규격의 쓰레기 봉투를 엷은 주황색으로 제작할 수 있다.<개정 2002·9·30, 2008·10·20>

